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9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20.2 분기)
- 감사인 지정 FAQ

세무 및 법률정보

- Tax tips: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리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20.2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20.2분기)

[출처: 금융감독원, 2020.08.25]

개요

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는 IFRS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건결정(Agenda Decision, 해석서 제정안)을 수행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의 해석기구

- IFRS 해석위원회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IFRS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받아 기준서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 현행 기준서 내에서 해석 가능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 IFRS 적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 과정 전반과 회의자료를 IFRS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http://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fric-updates/>)

‘20.2 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4 건)의 주요내용을 회계업무에 참고토록 공유함으로써 국내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기대

【참고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대상】

□ IFRS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 채택 요건(Due process handbook 5.16)을 두어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널리 퍼진 이슈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대상으로 함

- ①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 ②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제한을 통해 재무보고의 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 ③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

현황

I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현황

□ (현황)IFRS 해석위원회는 '20.2 분기 중 두 차례(4.29 일, 6.16 일)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온 4 개 안건에 대해 최종결정 합니다.

◦ IFRS 해석위원회는 4 개 안건 모두 현행 기준에서 원칙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안건결정 관련 IFRS 해석위원회 절차 】

1) 접수→ 2) Outreach→ 3) 1 차 회의→ 4) 잠정결정→5) 의견조회→ 6) 2 차 회의 → 7)최종결정

【'20.2 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최종)】

논의 주제 및 안건결정 요지	관련 기준서
1.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효과 (Multiple Tax Consequences of Recovering an Asset)	법인세 (IAS 12)
2. 변동리스료가 존재하는 판매후리스 (Sale and Leaseback with Variable Payments)	리스 (IFRS 16)
3.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Deferred Tax related to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법인세 (IAS 12)
4. 축구선수 이적시 지급받는 대가의 회계처리 (Player Transfer Payments)	무형자산 (IAS 38)

주요내용

Ⅲ.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내용

(1)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효과

□ (질의) 무형자산(라이선스) 장부금액을 회수하며 여러 가지 세효과 발생 시, 자산의 세무 기준액과 적절한 이연 법인세의 회계처리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1) 기업은 사업결합을 통해 무형자산(라이선스)을 취득

(장부금액 CU100, 기대잔존가치 0, 사용을 통해 라이선스의 장부금액을 회수)

(2) 현행 세법은 두 가지 과세체계로 구성

① 법인소득세(income tax) : 무형자산(라이선스) 사용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상각 비용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음

②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라이선스 만료 시 CU10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세법 상 자산의 사용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에 자본이득 세금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

□ (최종결정) 기업은 각 과세체계(법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 하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

◦ IAS 12의 기본원칙(문단 10) 적용 시, 법인소득세下 자산회수에 따른 세효과*와 자본이득세下 세효과**를 구분하여 일시적 차이를 산정하고 이연법인세를 인식

* 자산 사용으로 창출되는 과세대상이익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각비용

** 라이선스 종료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비용공제

【무형자산 취득시 일시적차이 구분(질의사례)】

① 법인소득세 : 가산할 일시적 차이 CU100

- 법인소득세 하에서 기업은 상각비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발생 (회계상 장부금액 CU100, 세무상 장부금액 CU0)

② 자본이득세 : 차감할 일시적 차이 CU100

- 자본이득세 하에서 기업은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때, 즉시 공제를 받으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발생 (회계상 장부금액 CU0, 세무상 장부금액 CU100)

※ 사례

① 취득원가 : 100

② 자산의 내용연수 : 2년 / 잔존가치 : 0

법인소득세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회계상 금액	100	50	-
세무상 금액	-	-	-
세무 조정	(100)	(50)	-
일시적 차이	(-)유보 100	(+)유보 50	(+)유보 50
가산할 일시적 차이 100			
자본이득세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회계상 금액	-	-	-
세무상 금액	100	100	-
세무 조정	100	100	-
일시적 차이	(+)유보 100	-	(-)유보 100
차감할 일시적 차이 100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IAS 12 문단 10)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세효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래의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감소)시킨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자산)를 인식한다.

(2) 변동리스료가 존재하는 판매후리스

□ (질의)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금액 측정과 자산 판매 손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은 유형자산을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하고, 동 유형자산을 5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
- (2) 유형자산의 이전은 기준서 IFRS 15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유형자산 판매로 회계처리하고, 이전대가는 거래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
- (3) 리스료는 모두 변동리스료로 구성되어 있고, 변동리스료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5년)동안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연동되며,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음

※ 사례

- ① 기존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형자산 장부금액 : CU 1,000,000
- ② 구매자-리스제공자가 지급한 이전대가 : CU 1,800,000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 ③ 리스료는 모두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 ④ 자산 판매일에 예상되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 CU 450,000

- 1. 소유권 비율 = 25%
- 2. 사용권 자산금액 : 유형자산 장부금액(CU 1,000,000) × 소유권 비율(25%) = CU 250,000
- 3. 인식할 매각손익 : (CU 1,800,000 - CU 1,000,000) × (1-25%) = CU 600,000
- 4. 회계처리

(차) 현금	CU 1,800,000	(대) 유형자산	CU 1,000,000
(차) 사용권자산	CU 250,000	(대) 부채	CU 450,000
		매각손익	CU 600,000

□(최종결정) 판매후리스의 경우, 지급리스료가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에 해당하더라도 부채에 포함하여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고 매각 손익을 인식(IFRS 16 문단 100(1))

◦ 일반적인 리스는 문단 27(2)와 BC 169를 적용하여 부채 측정 시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 이를 상기 판매후리스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 소유권 비율 0%, 부채금액 CU 0, 사용권 자산 CU 0, 처분손익 100%가 인식되어 문단 100(1)과 상충

◦ 판매후리스에 적용되는 문단 100(1)에서는 부채 측정 관련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판매후리스 거래 부채 측정 시 기초자산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

- 사용권자산과 매각 손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부채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분개상 잔여금액)

◆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시, 판매자는 매각한 유형자산 장부금액 중 리스를 통해 계속 보유하는 비율(보유권 비율*)을 산정하고,
 * 보유권 비율 =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부채))/(거래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 장부금액 중 보유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권자산으로 측정한 후, 이전대가와 장부가액 차액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 손익으로 인식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IFRS 16 문단 BC 266) 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완료된 판매에 대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차손익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거래의 판매요소(기초자산의 판매)에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법적 관점에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흔히 전체 기초자산을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백의 지속 기간에 대한 자산 사용권을 계속 가지므로 리스백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가치의 지분만을 판매한 것이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구매한 시점에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미 획득했었다. 그 사용권은 예를 들면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획득한 권리의 일부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에 관련되는 차익을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IFRS 16 문단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2)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IFRS 16 문단 BC169)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은 원가-효익만을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 위원들의 견해는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특히 일부 리스이용자가 수많은 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른 IASB 위원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그 성과가 생기거나 사용될 때까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3)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 (질의) 종속기업이 이익 배당 시에만 과세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하여 기업(질의자)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발생
- (2) 기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종속기업이 이익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IAS 12 문단 39의 종속기업 투자와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3) 질의자(지배기업)와 종속기업이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음
 - ① 이익 배당 시에만 20% 세율(배당세율)로 과세되며, 미배당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0% (유보세율)
 - ② 이익 배당과 관련해 종속기업에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기업(지배기업)에 중복과세하지 않음

□ (최종결정)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며, 이익 배당 시 부과되는 세율(20%)에 따라 측정

◦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는 부채 인식 면제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IAS 12 문단 39)

◦ 이익 배당으로 종속기업 투자자산 장부금액 회수가 예상되므로 관련 세효과를 반영해 배당세율(20%)에 따라 측정(IAS 12 문단 51)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2 문단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 (1)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 (2)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IAS 12 문단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4) 축구선수 이적 시 지급 받은 대가의 회계처리

□ (질의) 축구클럽에서 선수를 다른 클럽에 이적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등 이적료를 별도수익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무형자산(등록권)을 제거하고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할지 여부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① 축구구단(회사)은 다른 구단(이전받은 구단)에 선수를 이적시킴
 ② 선수 영입 시 구단은 전자 이적 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하며, 등록시점부터 고용계약이 성립하고, 선수는 상호 동의 없이는 구단에서 나갈 수 없음
 ③ 고용계약과 전자 이적 시스템 등록을 함께 '등록권'이라고 함
- (2) ① 구단은 등록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② 구단은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선수를 육성한 후 다른 클럽으로 이적시킴
- (3) ① 구단은 선수를 이적시키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적료를 수령
 ② 전자 이적 시스템 등록은 이전받은 구단으로 이관되지 않으며, 이전받은 구단이 선수를 등록(새로운 권리 취득)하는 시점에 법적으로 소멸
- (4) 구단은 이전받은 구단이 전자 이적 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할 때 무형자산 제거

□ (최종결정) 회사는 무형자산(등록권)의 장부금액과 순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

◦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문단*(IAS 16 문단 68A)을 준용하여 무형자산(등록권) 처분을 IFRS 15 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검토

* 임대목적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대체하고 판매금액을 IFRS 15 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

- 해당 문단은 유형자산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며, 무형자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IAS 38 문단 113) 해당 문단을 준용할 수 없다고 결론

◦ 기업은 등록권을 IAS 38 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등록권 제거와 관련해서는 IAS 38 의 제거규정 적용이 타당

- 무형자산 처분의 경우 IAS 38 문단 113 에서 수익이 아닌 차익으로 인식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

□ 현금흐름 표시와 관련해서는, IAS 7에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사례로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투자활동으로 공시(IAS 7 문단 16)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IAS 38 문단 113)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IAS 16 문단 68A) 그러나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IAS 7 문단 16)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감사인 지정 FAQ

감사인 지정 FAQ

[출처: 금감원 회계포탈 HOME> 외부감사인 지정 > 감사인 지정 FAQ]

1. 감사인 지정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지정 사유

-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 부채비율 과다(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등)
- ◆ 감사인 선임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 소속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 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회사
-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 감사보수 미지급, 감사자료 미제출 등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에서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등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된 회사
- ◆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등

2) 주기적지정 사유

- ◆ 新외감법 개정(20년 시행)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도입
 -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
 -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2. 감사인 지정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도 지정 감사인과 자유선임을 할 수 있는가?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6 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3 감사인을 재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후 2 주 이내 또는 본 통지를 받은 후 1 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 가능(시행령 제 17 조)합니다.

◦ 감사인 재지정 사유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지정 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 요청하는 경우 등

4 감사인 지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 다만, 당해감사범위 제한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나 우선지정 회계법인을 고려
※ 舊외감규정 제 13 조 ①~③항/新외감규정 별표 4)

5 지정 감사인과의 감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는가?

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가 지정감사인에게 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2 조 및 제 43 조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3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년 이하의 징역/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상장예정법인의 지정 감사 신청 방법?

상장예정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하여야 하며, 결산일 3 개월 전(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9 월말)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지정 요청 공문
- ◆ 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요청서
- ◆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 ◆ 상장 추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표 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 (비외감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상장예정법인의 간주지정 제도는 유지되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간주지정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상장예정을 목적으로 지정 감사가 필요한 경우 매년 지정감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8. 신규 추가된 재무기준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6호의 가 목(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목(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목(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까지의 감사인 지정사유에서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중소기업 고용촉진
을 위한 세제지원
정리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9선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촉진관련 세제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 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 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 지원내용

- **기업**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② ① 외의 경우: 위의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행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병역의무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과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1일 0.0025)을 가산하여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7.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육아휴직복귀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육아휴직복귀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내용

- 원칙: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특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text{임금증가분}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times \{1 + 0.038(\text{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times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사후관리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내용
 1.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text{소득공제금액} = \text{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times \text{일정금액}^*$$
-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0원
 -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2. 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 소득공제금액**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 1. ①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② 2.① 외의 경우: 위 1.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사후관리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②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2 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X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X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X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X 법 제29조의7제 1항제1호의 금액 X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②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X (법 제29조의7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X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지3694, 2020.07.28)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되,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 103 조의 19 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 13 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 13 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 13 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제 57 조 제 4 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 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면서 익금에도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상 이중과세조정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액공제를 통하여 되는 것이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 두 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2020.09.0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에게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외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법인 소재지 국 과세당국에 의해 예금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질의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는 삼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질의법인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기로 함.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회신】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 '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